

# 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56,444,712	22,693,341
일반회계	700,379,339	21,011,380
특별회계	56,065,373	1,681,961
기타특별회계	56,065,373	1,681,961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53,746,321	1,612,390
주택사업특별회계	13,000	39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62,602	28,878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69,100	2,073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189,350	35,681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85,000	2,55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.